

# 정보전산원 규정

□ 제정 : 1986. 03. 01

□ 개정 : 2004. 10. 01

□ 개정 : 2011. 10. 01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및 소재지)

- ① 본기관은 수원대학교 부속 정보전산원(이하 “본원”이라 한다)라 칭한다.
- ② 본원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 및 컴퓨터 통신망에 대한 연구 및 그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학생 교육 및 실습, 교수 및 학생의 연구를 지원하며 학교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및 그 운영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조 직

### 제3조(원장)

- ① 본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직원)

- ① 본원에 과장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 ② 본원의 직원은 관련 업무에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교 직원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따른다.

### 제5조(업무분장)

- ① 본원에 학사지원팀, 행정지원팀, 시스템운영팀을 둔다.
- ② 학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사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 계획 수립
  2. 학사업무의 분석 및 개발
  3. 기 개발된 학사업무의 처리 및 유지 보수
  4. 기 개발된 학사업무의 사용자 교육
  5. 교수연구 및 학생 교육실습을 위한 지원
  6. 기타 학사업무 개발에 관계되는 업무처리
- ③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 계획 수립
  2. 행정업무의 분석 및 개발

3. 기 개발된 행정업무의 처리 및 유지 보수
  4. 기 개발된 행정업무의 사용자 교육
  5. 교직원 전산교육
  6. 기타 행정업무 개발에 관계되는 업무처리
- ④ 시스템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스템 운영 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 계획 수립
  2. 서버 운영
  3. 네트워크 운영
  4. 각종 인터넷 서비스 운영
  5. 정보 보안 관리
  6.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관리
  7. 기타 원내의 시설, 기자재, 집기 비품 관리

## 제3장 정보화위원회

### 제6조(정보화위원회)

-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정보전산원장, 비서실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IT대 학장을 당연 직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9조(사업계획 등)

- ① 원장은 본원의 당해 사업 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연도 개시 1월 전까 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사업보고 등) 원장은 본원의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 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각종 장부의 기입·비치) 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컴퓨터기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비품, 소모품의 보관 및 수불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위임규정)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

- ① 본원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본원의 현금 출납사무는 경리과에서 관장한다.

제14조(사업계획) 원장은 본원의 당해 사업 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사업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원장은 본원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회계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 연도) 본원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5장 시행세칙

제17조(세칙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전산원 규정 시행세칙

□ 제정 : 2007. 9.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캠퍼스통신망 관리 및 운영

제2조(캠퍼스통신망 관리 및 운영)

- ① 수원대학교 캠퍼스 네트워크 통신망(이하 “캠퍼스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캠퍼스통신망의 모든 관리와 운영은 정보전산원에서 담당한다.
- ③ 캠퍼스통신망 관리자는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통신망 보호를 위해 설비를 단절, 사용 금지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및 손해는 사용자에게 있다.
- ④ 랜 포트는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1인 1개로 설치하되 정보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를 한다.

제3조(캠퍼스통신망 사용자 의무)

- ① 캠퍼스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정보 및 자원은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없다.
- ② 캠퍼스통신망 설비는 파손해서는 안 된다. 파손 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설비의 이동, 변경, 해체 시에는 반드시 정보전산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캠퍼스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캠퍼스통신망에 불법 접근 및 캠퍼스통신망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캠퍼스통신망을 통해 외부 인터넷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백도어 프로그램 등 각종 악성 코드의 감염으로 네트워크 속도 저하 및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기타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
- ⑤ 캠퍼스통신망의 운영에 방해되는 사용자 또는 PC는 일정기간 통신망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본교 홈페이지 관리자 및 사용자 의무)

- ① 본교 홈페이지상의 자유게시판, 묻고답하기, 자료실 등에 적용한다.
- ② 답변을 요하는 게시물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48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항의 삭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무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본교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된 게시물은 발견 즉시 통보 없이 삭제한다.

1. 각 게시판의 관리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
2. 게시판 운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의미 없는 게시물
3. 심한 욕설, 비속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게시물
4. 학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전. 선동성 게시물
5. 음란, 저속, 선정, 성희롱 등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6. 특정 대학교나 학과를 비방하거나 우열을 비교하며 대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게시물
7. 광고, 매매와 같은 상업적인 게시물
8.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여 게재한 게시물
9. 삭제된 게시물에 대응하는 게시물

##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